

2009. 5. 27. (수) 10:00

제159회 거창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심 사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 목 차 】

1.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05. 12.

나. 제출자 : 거창군수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05. 25(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라. 의안번호 : 제2009 - 20호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결혼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농촌사회의 환경변화에 대처함은 물론 거창군 인구증가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함(안 제2조제1호, 제6조제2항).
 - 거창군 내 거주자 : 3년 이상 → 1년 이상
-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지원대상자가 재혼인 경우에는 초혼 지원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 단서 신설).

○ 상위법명 개정 등에 따른 인용법명을 변경함
(안 제2조제2호).

- 「농업·농촌기본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호적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지원신청서 등 관계 별지서식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조례안은, 거창군 내 3년 이상 거주한 농촌총각이 국제결혼을 할 경우 결혼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해 오던 것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3년 이상 거주자를 1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지원대상자가 재혼인 경우에는 초혼 지원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거창군 내 거주하는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의 국제결혼 신청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은 물론 군의 인구증가시책에도 다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국제결혼의 지원기준에서 재혼인 경우 지원대상과

지원횟수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해석과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4조 단서를 삭제하여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가. 발의자 : 산업건설위원회

나. 수정내용 : 붙임

○ 제4조 후단의 단서를 삭제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정안	수정안
<p>제4조(지원기준) <u>거창군수</u> (이하 “군수” 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u>결혼 소요비용</u>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p>	<p>제4조(지원기준) <u>군수</u> --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 --- ----- ----- ----- ----- 다만, 제3조의 지원대상이 재혼인 경우에는 <u>초혼 지원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u></p>	<p>제4조(지원기준) <u>군수</u> -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 -- ----- ----- ----- ----- <u><삭 제></u></p>

수정의견 사유 : 이 조례의 제4조 단서 내용 중 지원대상과 지원횟수의 불명확한 표현으로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삭제 수정하고자 함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05. 12.

나. 제출자 : 거창군수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05. 25(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라. 의안번호 : 제2009 - 21호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수도법」 개정과 상수도 분야의 민원해소를 위한 표준 급수조례보급에 맞추어 급수공사의 비용부담 구분, 수돗물 공급조건, 상수도요금 및 사용수량 산정, 급수설비의 관리 등 상수도 급수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으로 사용자의 불편 해소 및 경제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안상가와 주상 복합건물의 상가로서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 급수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경우 위탁하여 시공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사 착공 및 준공검사 시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던 사항을 문서로 통보·신청하도록 하며,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수도물의 판매금지 조항은 「수도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함(안 제20조).
- 상수도계량기 이상 등으로 군수가 인정계량하는 사항 외에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사용수량 산정기준을 신설함(안 제30조제2항,제3항,제4항 신설).
- 계량기의 이상 시험결과 사용자의 책임이 없을 경우 시험비용은 군수가 부담하도록 하고, 상수도 사용수량 정정을 위한 계량기 시험오차 범위를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에 부합하도록 개선함(안 제31조).
- 누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를 명확히 함(안 제43조).

- 상수도요금 및 수수료와 이 외의 징수금(가산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규정을 신설함(안 제50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조례개정배경

- 이 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이 개정(2008. 3. 21.)되면서 수도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표준급수조례가 제정(환경부, 행정안전부)보급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개정내용검토

- 안 제6조의2(신설)에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안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 내지 안 제10조에서 급수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경우 위탁하여 시공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를 추가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1조에서 급수공사의 비용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경우 급수공사를 군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임.
- 안 제43조에서 누수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누수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부정급수가 방지될 것으로 보임.
- 이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맞게 환경부의 “표준급수조례” 표준안을 기초하여 거창군 지역여건을 감안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